

“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”



보 도 자 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- ▶ 보도 일시: 2012. 6. 14(목) 조간
<인터넷 6.13(수) 12:00 이후>
- ▶ 총 7 쪽(붙임자료 포함)

❖ 고용보험기획과 과 장 김 종 윤
사무관 한 은 숙

☎ 02-2110-7204, C.P 010-3282-2914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자영업자단체가 나섰다

— 업종별협회와 정부,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—

□ 한국외식업중앙회,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업종별 대표협회 9곳과 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 및 근로복지공단,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.13(수) “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”을 체결했다.

- 이번 협약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이 시행하는 ▲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(「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」)과 ▲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세부내용은 「참고1.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개요」 및 「참고2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」 참조

- 특히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「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」의 7월 본사업을 앞두고 자리가 마련되어 더욱 뜻깊다.

□ 이번 협약에서 업종별협회는 회원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,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

-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,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실업급여,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(창)업을 지원할 예정이다.
- 근로복지공단,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 중심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활동을 전개하고,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.
- 한편, 이번 협약식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사자인 자영업자 단체가 직접 나섰다는데 의의가 크다.
- 그만큼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음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.
-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“사회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가는데,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에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었다”며, “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한 회원사들의 관심이 크다.”고 말했다.
-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김용만 회장은 “고용보험이 지금까지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는데,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가웠다”면서, “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인만큼 적극 홍보하겠다”고 말했다.
-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“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어려운 형편에 있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, 이러한 분들도 따뜻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”면서
- “오늘 협약 체결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” 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한은숙사무관(☎ 02-2110-7204)에게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1>

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개요



* 두루누리: 국민 모두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두루 누린다는 의미

☐ 대상보험: 「고용보험, 국민연금」

- 가입률이 낮고 他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선 지원

* 고용보험료율 : 실업급여 1.1% (노사 각 1/2 부담), 고용안정·직업능력 개발 0.25% (사용자 전액부담)

* 국민연금 보험료율 : 9% (노사 각 1/2 부담)

☐ 지원대상

-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(월평균 보수 35~125만원) 근로자

☐ 지원수준

-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/2 ~ 1/3 지원
 -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: 1/2 지원
 -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: 1/3 지원

【예시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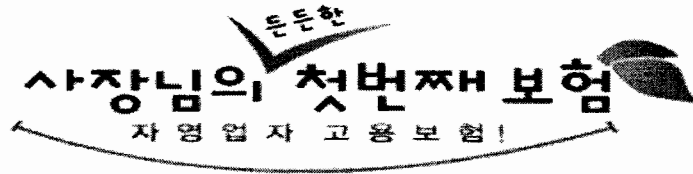
◎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 5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

- 근로자 1인당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 월 60,600원 부담
→ 월 20,200원(1/3) 지원
- 사업주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 월 318,000원 부담
→ 월 106,000원 지원

☐ 지원방식: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

<참고2>

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



- 가입방식: 임의가입(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)
- 가입대상: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,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

○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

-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.25%(매월 납부),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50%(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 차등)
- * 기준보수: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서,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음. 가입자는 5등급의 기준보수 중 택일

(단위: 원)

	기준보수	월 보험료	월 실업급여
1등급	1,540,000	34,650	770,000
2등급	1,730,000	38,920	865,000
3등급	1,920,000	43,200	960,000
4등급	2,110,000	47,470	1,055,000
5등급	2,310,000	51,970	1,155,000

○ 혜택

- (실업급여)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~18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

구 분	가입 기간(피보험기간)			
	1년~3년	3년~5년	5년~10년	10년이상
급여일수	90일	120일	150일	180일

- (직업능력개발) 훈련 비용의 50~80% 지원
- (전직지원)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에게 사업정리 절차 및 재취(창)업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

○ 가입기간: 사업개시 또는 제도 시행일('12.1.22)로부터 6개월

<참고3>

MOU 행사 개요

- 목 적: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·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- 일 시: '12.6.13(수) 15:00 ~ 15:40
- 장 소: 고용노동부 대회의실
- 참석자: 15명
 - 고용노동부 장관, 고용서비스정책관
 -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
 - 근로복지공단 이사장,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,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지원실장
 - 한국외식업중앙회 장흥식 부회장,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,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김재현 회장,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김진용 회장,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,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조수경 회장,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김용만 회장,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, 한국학원총연합회 한이남 부회장(9개 단체)

2 세부 일정

시간	내용	비고
15:00 ~ 15:05 (5')	개회선언 및 내빈소개	※ 사회: 고용보험 기획과장
15:05 ~ 15:10 (5')	인사말씀	장관님
15:10 ~ 15:25 (15')	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·자영업자 고용보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	고용서비스정책관
15:25 ~ 15:35 (10')	협약안 서명 및 기념촬영	
15:35 ~ 15:40 (5')	마무리말씀	장관님

* MOU 체결식 언론 공개

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서

협약기관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기관이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방향) 협약 기관은 본 협약을 기반으로 상호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최대한 협력한다.

제3조(협력사항) 협약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.

1. 사회보험을 통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도모
2. 소규모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체계 구축
3.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

제4조(역할분담) 협약 기관은 제3조의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.

1. 한국외식업중앙회, 한국학원총연합회, 대한미용사회중앙회, 한국프랜차이즈협회,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,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, 한국이용사회중앙회,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, 대한제과협회는 회원사가 사업개시 초기부터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인식하고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회원사에 대한 교육 및 안내에 힘쓰며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한다.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회원사에 적극 홍보한다.
2.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, 소규모사업장의 사회보험 신고 관련 행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.

3. 고용노동부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, 직업능력 개발 지원, 재취(창)업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 향상 및 생활안정을 지원한다.

4. 근로복지공단,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 중심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활동을 전개하고, 현장에서 제기하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.

제5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.

2012년 6월 13일

고용노동부 장관

보건복지부장관

근로복지공단 이사장

국민연금공단 이사장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한국외식업중앙회장

한국학원총연합회장

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

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

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장

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

한국미용사회중앙회장

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장

대한제과협회장

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2012. 6. 13.



고용노동부
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



보건복지부

【 차 례 】

I.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	2
II. 자영업자 고용보험	6
III. 협조요청사항	9

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】

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사회안전망의 혜택 미흡

근로자

- 당연가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·국민연금 가입률 저조
- *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·국민연금 가입률은 50% 미만

사업주

- 빈번한 생성·소멸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미흡
- * 개업 후 50% 이상이 3년 이내 폐업

사회안전망 강화

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강화

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

-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% 지원
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

-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
-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혜택 제공



* 두루누리: 국민 모두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두루 누린다는 의미

1. 추진경과

□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요구 증가

○ 4대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*은 갖추었지만, 비용 부담 등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여 전국민에 대한 보장 역할은 부족

* '63년 산재보험 도입 이후 국민연금('88년) · 건강보험('89년) · 고용보험('95년)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

* 사회보험가입률(경찰 부가조사): 【고용보험】 5인 미만(28.2%), 5~9인(55.7%)
【국민연금】 5인 미만(26.6%), 5~9인(53.1%)

□ '11년 정부, 국회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 ·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결정

○ 관계부처 · 전문가 토의,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부계획 마련

○ 예산심의과정에서 소규모사업장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사업규모 확대

○ 보험료징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, 보험료 지원근거 마련('11.12월)

* 보험료징수법 제21조,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

2. 주요내용

□ 대상보험: 「고용보험, 국민연금」

- 가입률이 낮고 他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선 지원

* 고용보험료율 : 실업급여 1.1% (노사 각 1/2 부담), 고용안정·직업능력 개발 0.25% (사용자 전액부담)

* 국민연금 보험료율 : 9% (노사 각 1/2 부담)

□ 지원대상

-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(월평균 보수 35~125만원) 근로자

□ 지원수준

-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/2 ~ 1/3 지원
 -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: 1/2 지원
 -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: 1/3 지원

【예시】

◎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 5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

- 근로자 1인당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 월 60,600원 부담
→ 월 20,200원, 연 242,400원 지원
- 사업주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 월 318,000원 부담
→ 월 106,000원, 연 1,272,000원 지원

- 지원방식 :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

3. 추진현황

□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 시범사업 시행

- (목적) 지원프로세스 등을 사전 검증하여 문제를 예방하고, 가입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운영·평가
- (지역선정) 소규모사업장 및 근로자의 적정 분포, 가입지원을 위한 행정여건, 자치단체의 사각지대 해소 의지 등을 고려, 선정
 - * 안양, 청주, 천안, 원주, 전주, 목포, 안동, 제주, 서울 동대문구, 대구 달서구, 인천 부평구, 광주 서구, 대전 서구, 울산 남구, 부산 부산진구, 창원

□ 시범사업 지역 사회보험 가입확대 추진

○ 가입확대 추진체계 구성

- (중앙) ①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('12.1.11)

* 고용부, 복지부, 시범지역 자치단체, 복지공단, 연금공단, 건보공단

②고용부 차관 주재 「사회보험가입확대 추진단」 회의 개최

- (지역) 16개 지역별 「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」 구성

* (구성) 지방고용노동관서, 자치단체, 사회보험 공단, 업종별 단체 등

○ 지역별 가입확대 협의체 및 「찾아가는 가입서비스」 활동 본격화(2월 중순~)

- 가입지원요원을 투입, 현장방문 중심 미가입자 발굴에 총력
-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하여 전방위적인 홍보 실시

4. 향후계획

◆ 시범사업 성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7월 본사업 차질 없이 준비·시행

□ 관련법령 개정

-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(3.14~), 7.1 시행에 맞추어 입법 정상 추진

□ 추진체계 조기 구성

- (중앙단위) 사회보험 가입 관련 홍보 및 사회적 이슈 조성

-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가입에 대한 긍정적 이슈 창출
- 전국단위 언론매체 홍보 등을 통해 인지도 제고
- 사업장 가입 안내 활동 전개

*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미가입사업장에 대해 양 공단에서 DB를 공동 구축, 안내문 발송(6.11)

* 기가입 지원대상사업장에 안내문 발송(50만개소, 6.25)

- (지역단위) 가입확대 추진체계 조기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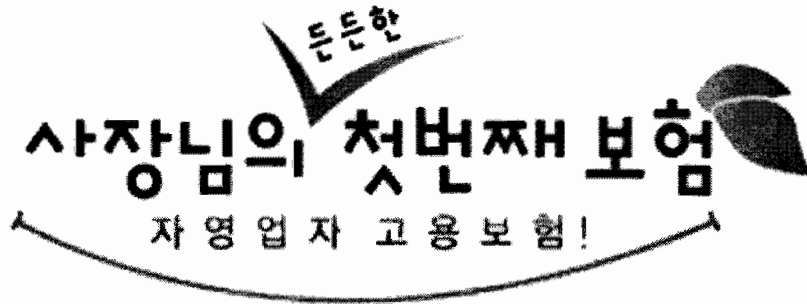
- 6월 초까지 지역별 「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」 및 「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반」 구성

⇒ 사업 초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장 방문 등 가입촉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

* 중앙단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역단위에서도 유관기관, 업종별 연합회를 아우르는 협약 체결

<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TV 광고>





1. 추진경과

-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높으나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“생계형”이 많아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필요
 - 특히, 최근 베이비부머 등을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심 증가

- * 전체 자영업자의 1/4(169만명)이 생계형 자영업자이고, 약 229만명이 과잉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(삼성경제연구소, '12.2월)
- * 개업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3년 이내에 폐업(통계청 ‘사업체 생성·소멸 현황 분석, ‘11.2월)
- * 5인 미만 숙박·음식점은 대부분 자신의 인건비도 못 건지는 수준에서 사업체를 꾸려나가고 있음(한국경제, '12.4월)
- * 자영업자 부채는 320조원에 달하고, 자영업자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(159.2%)는 상용근로자보다 2배 이상 높음(한국금융연구원, '12.5월)

⇒ 자영업자도 폐업 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제도 시행('12.1.22)

2. 주요내용

○ 가입방식: 임의가입(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)

○ 가입대상

-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,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

○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

-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.25%(매월 납부),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50%(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 차등)

* 기준보수: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서,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음. 가입자는 5등급의 기준보수 중 택일

(단위: 원)

	기준보수	월 보험료	월 실업급여
1등급	1,540,000	34,650	770,000
2등급	1,730,000	38,920	865,000
3등급	1,920,000	43,200	960,000
4등급	2,110,000	47,470	1,055,000
5등급	2,310,000	51,970	1,155,000

○ 혜택

- (실업급여)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~18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

구 분	가입 기간(피보험기간)			
	1년-3년	3년-5년	5년-10년	10년이상
급여일수	90일	120일	150일	180일

- (직업능력개발) 훈련 비용의 50~80% 지원
- (전직지원)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에게 사업정리 절차 및 재취(창)업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

○ 가입기간

- 사업개시 또는 제도 시행일('12.1.22)로부터 6개월 이내

3. 추진현황

- (홍보추진)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인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중
 - * TV·라디오 광고, 무가지 기획기사 및 SNS 등 매스미디어 홍보, 유관 기관 교육·설명회 제도 안내, 자영업자 대상 안내문 및 홍보물 발송
- (의견수렴) 업종별 협회 간담회 개최, 업종별 협회 개별 방문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의견 수렴
- (가입현황) '12.6.10(일) 현재 7,679명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

4. 향후계획

- 기존 자영업자는 '12.7.21이 지나면 가입하지 못하는만큼, 7월 까지 집중적 홍보 실시
 - TV·라디오 광고 추가 송출(6~7월) 및 현수막 게재
 -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홍보 병행
 - * '지역별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', '찾아가는 가입확대서비스반'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동도 함께 지원
 - 직업방송 및 소상공인 TV 동영상 홍보
 - 안내문 재차 발송(6월중순) 및 자치단체·업종별 협회 연계 홍보
- '13년 실업급여 지급에 대비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업무 프로세스 정비
- 자영업자 특성에 맞는 훈련특화과정 개발 및 전직지원사업 확대 실시('12년 100명→'13년 200명)

<자영업자 고용보험 TV 광고>



1.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극 홍보

- 회원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적극적인 가입 안내
 - * 포스터, 리플릿 등 홍보물 지원 가능
- 협회지 및 협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게재
- 회원 교육, 워크숍 개최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 소개
 - 회원사가 창업 초기부터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, 신고 독려
- 회원사에서 관련 문의 시 간단한 안내 제공 및 근로복지공단 (1588-0075) 연계

2. 제도 관련 제안 및 현장 목소리 전달

- 제도 내용·제도 운영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 경우 제안
 -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관련 현장 반응을 전달하고, 문제점 및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
 -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특화과정, 전직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등에 대한 의견 제시
-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의견 제시
 -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폐업사유에 대한 의견 개진
 - 경영악화 등 비자발적 폐업사유 확인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
 - 향후 실업급여 신청자 발생 시 실제로 비자발적 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, 사례별로 업종별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